

화물공제조합 신상품 주요내용

자 신 체 사 고 보 담

■ 가입대상

- 자동차공제 (대인 I·II, 대물) 계약차량

■ 보장내용

-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

■ 지급 공제금의 종류

- (사망공제금)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을 한도로 지급
- (부상, 후유장애 공제금) 지급기준의 해당 급별 각 계약금액을 한도로 지급

■ 가입금액 및 기본분담금

금액 차종	사망 후유장애 부상	1.5천만원 1.5천만원 1.5천만원	사망 후유장애 부상	3천만원 3천만원 1.5천만원
1종	40,380원		53,310원	
2종	49,730원		65,650원	
3종	39,120원		51,690원	
4종	28,910원		38,190원	

금액 차종	사망 후유장애 부상	5천만원 5천만원 1.5천만원	사망 후유장애 부상	1억 원 1억 원 1.5천만원
1종	68,770원		104,420원	
2종	84,690원		128,540원	
3종	66,690원		101,190원	
4종	49,270원		74,770원	

※ 실제 분담금은 적용받는 합인·합종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약지부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급 출 동 서 비 스 특 약

■ 가입대상

- (특약 I) 적재정량 1.6톤 이하의 3종, 4종 공제계약 자동차
- (특약 II) 적재정량 1.6톤 초과 ~ 5톤 이하의 2종, 3종 공제계약 자동차

■ 서비스 내용

제공서비스	특약 I	특약 II
배터리충전	0	0
잠금장치 해제	0	0
비상급유	0	0
타이어 교체	0	-
긴급견인	0	-
비상구난	0	-

■ 특약분담금

차량연식	특약 I	특약 II
1년 이하	26,000원	16,000원
2년 이하	33,800원	20,800원
5년 이하	41,600원	25,600원
5년 초과	52,000원	32,000원

■ 유의사항

- (서비스 횟수) 기본 5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중도 가입 및 단기 가입 시는 3회의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불가) 서비스 요청지가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도서·산간지역, 통신이 원활치 못하여 서비스 불가로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차량의 적재물, 구조변경 등의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추 가 비 용) 특수한 구난 등의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장출동 및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

1577-8278

1번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 2번 긴급출동서비스

※ 긴급출동서비스는 2018년 2월 1일부터 콜센터에 반영

앞서기는 공제, 신뢰받는 공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송죽동, 경기화곡6층) TEL 031-259-3355, FAX 031-258-3931

업 무 과

과 장 : 김 희 순

문서번호 : 경기 업무 제 2316 호

시행일자 : 2020. 12. 01.

수 신 : 각 조합원사

참 조 : 공제(보험)담당자

선결			지시		
접	일 자		결		
수	시 간		재		
	번 호		·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 목 :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상품 홍보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업무 제01660호(17.09.26) "신규사업 시행예정 및 제도변경 사항 안내" 및 경기 업무 제00085호(18.01.12)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공제상품의 다각화를 통한 사업 경쟁력 유지 및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담보 및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이 2018.02.0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지입차주분들에게까지 본 상품의 홍보가 미흡하여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차량 운행 중 동 상품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미가입으로 해당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동 상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입차주들에게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보다 나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입실적 ('20년 10월말 기준)

- 자기신체사고 담보 : 8,654대 (16.9%) 대인Ⅱ 계약대수(51,111대) 대비
-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 6,285대 (20.1%) 적제정량 5t 이하 대인Ⅱ 계약대수 (31,252대) 대비

이면계속 -

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송죽동, 경기화원6층) TEL 031-259-3355, FAX 031-258-3931

업 무 과

과 장 : 김 희 순

- 아 래 -

☐ 자기신체사고 담보

- (도입배경) 우리조합은 업계 특성을 반영하여, 운행 중 사고와 작업 중 재해를 동시에 담보하는 「종사자재해 담보」를 개발·운영하여 왔으나,
 - 가입대상이 위수탁차주 1인으로 제한되어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입대상, 담보범위, 분담금 수준 등을 조정한 「자기신체사고」담보 도입

○ 기본사항

- (조합원) 자동차공제약관 제7조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조합원(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조합원) 및 그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보상내용)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
- (가입대상) 대인Ⅰ·Ⅱ, 대물 담보종목에 계약중인 차량에 한하여 가입
- (공제계약금액) 부상은 1,500만원 공통이며, 사망/장애는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 원의 총 4개 구간으로 선택 가입
- (할인·할증 적용) 사고 건당 1점(10%)의 내용점수가 반영되며, 일반공제와 합산하여 적용 (→ 사고건수에 대한 특별할증 적용)

☐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 (도입배경) 조합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도입 요청에 부응하고 손보사에 대한 사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도입

○ 기본사항

- (조합원) 자동차공제 보통약관 제7조의 조합원과 동일
- (보상내용) 조합원이 청약서 기재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Ⅰ·Ⅱ」를 요청한 때 약관에 정한 서비스를 지정업체를 통해 제공

- (특약의 종류 및 제공서비스)

• 특약 I (적재정량 1.6톤 이하의 3, 4종 일반·개인화물 공제계약자동차)

구 분	제공서비스	비 고
출동 서비스	배터리충전	• 배터리 교환 시 배터리 실비는 조합원이 부담
	비상급유	• 3리터 / 년 2회, 1일 1회 한정
	타이어교체	•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잠금장치 해제	• 외산차, 특수 잠금장치(스마트 키, 이모빌라이저 등), 사이드 에어백 장착 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견인/구난 서비스	긴급견인	• 긴급견인 10KM 제공 *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조합원이 실비부담
	비상구난	• 비상구난의 경우 기본작업에 한함 * 특수한 구난(약관내용참조)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발생하며, 조합원이 실비부담 **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서비스취소	조치불가	• 서비스 사용횟수 제외

• 특약 II (적재정량 1.6톤 초과 ~ 5톤 이하의 2, 3종 일반·개인화물 공제계약자동차)

구 분	제공서비스	비 고
출동 서비스	배터리충전	• 배터리 교환 시 배터리 실비는 조합원이 부담
	비상급유	• 5리터 / 년 2회, 1일 1회 한정 *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급유 분은 조합원이 실비부담
	잠금장치 해제	• 외산차, 특수 잠금장치(스마트 키, 이모빌라이저 등), 사이드 에어백 장착 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서비스 취소	조치불가	• 서비스 사용횟수 제외

- (분담금 결정) 차량연식 및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기타사항) 일시납이 원칙이며, 공제기간 1년인 경우 계약기간 중 5회의 서비스 제공 (→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은 3회),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정액공제

붙임 : 화물공제조합 신상품 주요내용. “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경 기 지 부

